[준법감시인 심의필 2022-1557(심의일: 2022.12.12)(유효기간: 2023.01.01 ~ 2023.12.31)]



개인형 퇴직연금제도(IRP) 상품 설명서

| 항 목 | | 내 용 | | |
|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|--|
| IRP제도 개요 | 소득이 있는 개인이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기 적립/운용하고 만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| l 위해 세제혜택을 받으며 부담금(개인부담금 또는 퇴직금)을 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 | | |
| | 가입대상 | 증빙서류(택1) | | |
| |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|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| | |
| 가입대상 |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| 퇴직연금제도 가입사실 확인서, 근로계약서, 재직증명서, 원천징수영수증,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| | |
| 및 증빙서류 | 자영업자 | 사업자등록증,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소득금액증명원, 고용보험가입확인서, 산재보험 가입확인서 등 | | |
| | 퇴직금제도 적용근로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| 근로계약서, 재직증명서, 원천징수영수증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| | |
| | 직역연금 가입자 (공무원, 사립학교직원, 군인, 별정우체국직원) | 재직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| | |
| 납입방법 | 자유납입 또는 정액적립 (납입중단에 따른 | 실효 없음) | | |
| 납입한도 | 개인부담금: 연간 1,800만원 (연금저축 및 퇴 직 금: 과세이연 된 퇴직소득 ※ISA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계좌 만기 시 ※1주택 고령가구*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 | | | |
| 세액공제 (개인부담금) | ▶ 종합소득 45백만원 (근로소득만 있는 경 | 우 총급여 55백만원) <u>이하</u> 의 경우 당해년도 <u>납입액의 16.5%</u> 우 총급여 55백만원) <u>초과</u> 한 경우 당해년도 <u>납입액의 13.2%</u> [한도) : 전 금융기관 합산 900만원(600만원)+ISA 만기 전환 | | |
| 연금개시 | 연단위로 수령가능 | 이상인 경우, 연금개시 가능하며 연금지급기간은 최소 10년 이상 관계없이 만55세 이상이면 연금개시 가능 (연금개시 전 별도신청) | | |
| | ▶가입자가 원할 경우 중도해지(일시금 지 | 급) 가능 | | |
| | 중도인출 사유 (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2조 | 부득이한 사유 (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2) | | |
| 중도해지 및 중도인출 | 무주택자 주택구입 무주택자 주거목적의 전세금/임차보증금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으로서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는 5년 이내 가입자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(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출 : 상기 사유에 해당될 경우 중도인출 7 | 부담 | | |

BNIX부산은행

| 항 목 | | | | | 내 용 | | | |
|---|---|--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구분 | 퇴직급여 | | | <i>7</i> (세액 | 수 익 | |
| -1 .11 | | 연금수령 | 연금소득세(퇴직소득세 70%) *단 연금수령시점 10년 초과시 퇴직소득세 60% 적용 | | | 저율 · 분리과세* 종합과세, 16.5% 분리과세 | | |
| 과 세 (세율) | | 연금 외 수령 | 토 | 디직소득세 | | 기타소득세(16.5%) | | |
| ("=) | | | → 5.5% 적용 / 70 과 : 종합과세 또는 |)~79세 → 4.4 = 16.5% 분리: | 1% 적용 / 8 과세 | | | |
| | | 구 분 | 운용관리 수 | 수료율 | 자산 | 관리 수 | -수료율 | 장기계약할인 |
| | | 고객납입액 | 1억원미만 1억원이상 | 0.08% 0.07% | 1억원미 1억원이 | | 0.20% 0.17% | 2차년도 10% 3차년도 12% |
| | | 퇴 직 금 | 1억원미만 1억원이상 | 0.30% 0.28% | 1억원미 1억원이 | | 0.20% 0.17% | 4차년도 15% 5차년도 이후 20% |
| 수수료 | 1 | ▶ 비대면 신규계좌 ▶ 연금수령개시를 ▶ 수수료 = (대상기 ▶ 계약이전시 퇴직 ▶ 매년 계약응당일 ※ 단, 수익증권 운 | 신청한 경우에는 기간 중 평가금액! 1연금사업자와 최 1 납입금액에서 치 | 운용관리수수 의 평균) x 수수 초로 계약한 날 나감 | ·료의 80% 수료율 x (적 날을 계약 시 | 할인율 용일수 작일로 | · 적용 · /365) x (1-할 | |
| 자산운용 | - | - 가입자 본인의 은 - 수익증권으로 운 - 영업점 방문 또는 | 용 시 원금손실 기 | 'ト능성 있음 | | | (비율) 변경 가 | <u> </u> |
| 편입상품에 따라 원금보장 여부 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| | | 보호 한도는 귀하 나머지 금액은 보 | 의 다른 예금! 호하지 않습니 | 년호 대상 금 다. | 금융상품 | 품과 별도로 19 |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 인당 "최고 5천만원"이며, |

유의사항

본 상품설명서는 고객의 안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은행과 고객간의 계약관계에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, 실제 계약내용은 수령하시는 계약서에 따릅니다.

그 밖에 상세내용은 가입 전 반드시 계약서를 참조하시고,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영업점 방문하시거나,부산은행 고객센터 (1588-6200)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
퇴직연금 불건전 영업 신고센터 이용안내

퇴직연금 불건전 영업사례

-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계약체결 강요행위
- 퇴직연금 가입을 조건으로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직.간접적으로 부당한 부가서비스 등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
- 기타 퇴직연금 계약체결과 관련한 퇴직연금사업자의 관련 법규 위반행위

이용안내

-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 홈페이지(http://pension.fss.or.kr)
-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: 금감원콜센터 1332

| | • 개인형IRP <i>7</i> 수수료가 각 | | | 립금 평균잔 | 액을 기준으 | 로 아래의 수 | 수료율을 적 | 덕용하여 운용 | · 자산관리 |
|--------------------|---|--|---|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| 구 분 | | 대면개설시 (| 연간 수수료율 | | 온라인개설시 연간 수수료율 | | | |
| | T E | 운용관리 | 수수료율 | 자산관리 | 수수료율 | 운용관리 | 수수료율 | 자산관리 | 수수료율 |
| | 고 객 | 1억원미만 | 0.08% | 1억원미만 | 0.20% | 1억원미만 | 미적용 | 1억원미만 | 미적용 |
| 수수료 | 납 입 액 | 1억원이상 | 0.07% | 1억원이상 | 0.17% | 1억원이상 | 미적용 | 1억원이상 | 미적용 |
| 부 과 | 퇴 직 금 | 1억원미만 | 0.30% | 1억원미만 | 0.20% | 1억원미만 | 미적용 | 1억원미만 | 미적용 |
| | A 4 B | 1억원이상 | 0.28% | 1억원이상 | 0.17% | 1억원이상 | 미적용 | 1억원이상 | 미적용 |
| | * 개인형IRP에; **기타 수수료 ※ 금융회사별 | 할인조건 및 ! 수수료 비] | 연금수령단계 교 는 '통합연 | 수수료율은 금포털' (http | 운용·자산관 s://100lifepl | 리약관(계약시 an.fss.or.kr) | h)에서 확인 기 에서 확인기 | 가능함 /능함 | |
| | • 이와 별개로 보수율은 해 | | | | | 운용금액에 | 대해 펀드보 | 수가 별도로 | 무과 됩니다. |
| 중도해지 세 제 | 고객이 자기 지할 경우에 *중도해지시, | 는 공제액보 | 다 많은 세금 | 금*을 납부 할 | 수 있습니다 | <u></u> 부. | 하지만, 세약 | 백공제를 받은 | 은 후 중도해 |
| 연금수령 조 건 | • ① 만 55세 조의2) 에서 *단, 퇴직금 0 | 정한 한도내 | 에서 수령해 | 야 낮은 세율 | 율 의 연금소득 | 특세율을 적용 | 용 받을 수 있 | | (시행령 40 |
| 연 간 납입한도 설 정 | 소득세법상(및 연금저축 설이 불가능*연말 세액공 | 시행령 40조 계좌를 합신 할 수 있으므 제를 받는 기 | (의2) 연간 7 (의2) 연간 7 (함)할 수 있으 (라로 유의하시 (조금액은 90 | 자기부담금 : 므로, 계좌당 시기 바랍니다 | 납입한도를 출 낭 납입한도 를 다. 면, 고객이 납 | 최대 1,800면 를 너무 높게 | <u>난</u> 원*까지 설 설정할 경약 | 정(모든 금융 우에는 다른 ' 1,800만원임 | 연금계좌 개 |
| 적립금 운 용 | 고객이 적립 운용상품 교증도해지이술 마찬가지로, 수수료가 발시기 바랍니 | 체·해지· 계 월 이 적용 됩니 일부 펀드싱 생할 수 있起 | 약이전 을 위해 나다. 품 (특히, 만) | 해, 원리금보 기가 정해진 | 장상품을 만 펀드) 은 편입 | 기전에 매도함 | 할 경우에는 '' (예: 2년) | 만기 약정금 에 환매할 경 | 의 보다 낮은 |
| 교 부 확 인 | • 부산은행 ((핵심설명/ | | | (직위 / 성명 -요내용을 | | (음.) |)으로부 | L터 위 내용C | 베 대하여 |



성명 :

서명 또는 (인)

| | • 개인형IRP <i>7</i> 수수료가 각 | | | 립금 평균잔 | 액을 기준으 | 로 아래의 수 | 수료율을 적 | 덕용하여 운용 | · 자산관리 | |
|--------------------|--|---|---|---|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|
| | 구 분 | 대면개설시 연간 수수료율 | | | | 온라인개설시 연간 수수료율 | | | | |
| | т | 운용관리 | 수수료율 | 자산관리 | 수수료율 | 운용관리 | 수수료율 | 자산관리 | 수수료율 | |
| | 고 객 | 1억원미만 | 0.08% | 1억원미만 | 0.20% | 1억원미만 | 미적용 | 1억원미만 | 미적용 | |
| 수수료 | 납 입 액 | 1억원이상 | 0.07% | 1억원이상 | 0.17% | 1억원이상 | 미적용 | 1억원이상 | 미적용 | |
| · . 부 과 | 퇴 직 금 | 1억원미만 | 0.30% | 1억원미만 | 0.20% | 1억원미만 | 미적용 | 1억원미만 | 미적용 | |
| | A 4 B | 1억원이상 | 0.28% | 1억원이상 | 0.17% | 1억원이상 | 미적용 | 1억원이상 | 미적용 | |
| | * 개인형IRP에 **기타 수수료 ※ 금융회사별 | 할인조건 및 | 연금수령단계 | 수수료율은 | 운용·자산관 | 리약관(계약사 | 1)에서 확인 기 | 가능함 | | |
| | • 이와 별개로 보수율은 해 | | | | | 운용금 액에 | 대해 펀드보 | 수가 별도로 | 부과 됩니다. | |
| 중도해지 세 제 | • 고객이 자기 지 할 경우에 *중도해지시, | 는 공제액보 | 다 많은 세금 | 금*을 납부 할 | 수 있습니다 | <u></u> 부. | 하지만, 세약 | 백공제를 받은 | 은 후 중도해 | |
| 연금수령 조 건 | • ① 만 55세 조의2) 에서 *단, 퇴직금 0 | 정한 한도내 | 에서 수령해 | 이야 낮은 세월 | 율 의 연금소득 | 득세율을 적용 | 용 받을 수 있 | | (시행령 40 | |
| 연 간 납입한도 설 정 | 설이 불가능 *연말 세액공 | ·계좌를 합신 할 수 있으드 · 제를 받는 기 | t)할 수 있으 므로 유의 하시 준금액은 90 | 므로, 계좌당 시기 바랍니다)0만원 인 반면 | 남 납입한도 를 다. 면, 고객이 납 역 | 를 너무 높게 | 설정할 경우 | P 에는 다른 ' | | |
| 적립금 운 용 | 고객이 적립 운용상품 교 중도해지이율 마찬가지로, | 금에 대해 운 체·해지· 계 율이 적용 됩니 일부 펀드싱 '생할 수 있起 | 용지시를 ㅎ 약이전 을 위해 나다. 품 (특히, 만기 | 해, 원리금보 기가 정해진 | 우에는 금리기 장상품을 만기 펀드) 은 편입 | 기전에 매도함 한 후 단기간 | 할 경우에는 난내 (예: 2년) | 만기 약정금리 에 환매할 경 | 리 보다 낮은 | |
| 교 부 확 인 | • 부산은행 ((핵심설명/ | | | (직위 / 성명 - 요내용을 | | (음.) |)으로부 | L터 위 내용C | 베 대하여 | |



서명 또는 (인)

성명 :

주요내용 설명 확인서

■ 상품명: 개인형퇴직연금 (IRP)

■ 판매직원 필수 확인사항

- 개인형IRP 신규 신청하시는 고객님이 가입대상이 맞는지를 확인합니다.
- 가입대상 확인서류를 반드시 제출 받아 확인하고 신규 업무를 처리합니다.

■ 판매직원: 직위 성명 서명 또는 (인)

■ 주요내용 확인

| | | 내 용 | | | 예 | 아니오 |
|--|--|--|---|---|----------|------------|
| 퇴직금 - | 수령 용도로 개인형 IRP계좌를 7 | 배설후 즉시 해지 예정이십니 | 까? (예 / 아니오 체크 ㅂ | h람) | | 아래답변 |
| | 위의 항목을" | '아니오"로 답한 경우 | 아래 내용을 확인 | 하시기 바랍니다 | | |
| | | 내 용 | | | "확인 | 함"체크 |
| ● 개인부든 | 남금 입금(퇴직급여제외)을 위한 IR | P 개설시점 전후 1개월이내 5 | 당행에서 대출 취급이 제한 | · 됩니다. | <u> </u> | 학인함 |
| | 병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연금수령 수 있습니다. | 개시신청을 하셔야 연금지급 | 이 가능하며, 연금지급액은 | 2 매년 | <u> </u> | 박인함 |
| ※세액공 | 3 본인자금 입금한도는 전 금융기 3제 대상 납입한도(연금저축 납입 1원(600만원)+ISA 만기 전환금액: | 한도) : 전 금융기관 합산 | 다. | | <u> </u> | 학인함 |
| | 당제는 16.5%(지방소득세포함) 입 | | | | | |
| ● 세액공제 | 당제는 16.5%(지방소득세포함) 입 제를 받은 후 연금수령이 아닌 방소득세포함) 적용됩니다. | | | 타소득세 | <u> </u> | 박인함 |
| ● 세액공자 16,5%(지 | 제를 받은 후 연금수령이 아닌 방소득세포함 적용됩니다. 명 또는 일부인출시 순서 | 중도해지시 세액공제 받은 | 금액 및 운용소득은 7 | | <u> </u> | 악인함 |
| ● 세액공자 16.5%(지 ● 연금수량 개인 부담금 | 에를 받은 후 연금수령이 아닌 방소득세포함) 적용됩니다. 명 또는 일부인출시 순서 구분 퇴직급여 세액공제 받은 금액 세액공제 받지않은 금액 운용소득 | 중도해지시 세액공제 받은 일시금(부분) 수령시 퇴직소득세 기타소득세 과세제외 기타소득세 | 면금 수령시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 *주1) 연금소득세(연령별 과세) 과세제외 연금소득세(연령별 과세) | 인출순서 ② ③ ① ① ③ | | 학인함 학인함 |
| ● 세액공자 16.5%(지 ● 연금수령 개인 부담금 ※ 주1) 퇴직 * 개인부담 분리과세 | 에를 받은 후 연금수령이 아닌 방소득세포함) 적용됩니다. 경 또는 일부인출시 순서 구분 퇴직급여 세액공제 받은 금액 세액공제 받지않은 금액 운용소득 급여를 연금수령시 퇴직소득세 30 금에 대한 연금 수령액이 매년 1,200만 | 중도해지시 세액공제 받은 일시금(부분) 수령시 퇴직소득세 기타소득세 과세제외 기타소득세 3% 경감된 세액적용(단, 연금- 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적용, 연합 |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 *주1) 연금소득세(연령별 과세) 과세제외 연금소득세(연령별 과세) 수령시점 10년 초과시 퇴직 금 수령액이 1,200만원 초과인 | 인출순서 ② ③ ① ③ 소득세 60% 적용) 경우 종합과세 또는 | | |